

심 사 보 고

1997. 6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5월 29일, 송옥순 의원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5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('97.6.17) 상정 심사
제13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'97.6.18) 심사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송옥순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
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
-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
위함

나. 주요 골자

- 기금의 조성 (안 제3조)
 - 충청북도의 출연금
 - 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재산
 -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

○ 운용기금의 사용 (안 제13조)

-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
- 여성의 복지증진사업
- 여성의 사회교육사업
-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
-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○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 (안 제5조)

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 :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 원 : 여성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
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중에서
도지사가 위촉하는 자
- 간 사 : 충청북도 여성복지과장

○ 기금의 지원 및 충청북도의 출연금 예산계상 (안 부칙)

- 기금지원 : 안 제13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
-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: 안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청북도의 출연금은
1998년부터 예산계상할 수 있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
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
- 여성발전기금의 조성, 관리,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발의 의원인 송옥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하신 바와 같이
안 제3조 제1항 제2호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 재산
조항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기금의 조성 중 "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재산"은
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취지에 따라 삭제
-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줄임
- 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고 정식 의결 절차 준수토록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함
- 안 제5조 제1항중 "15인 이내의" 를 "13인 이내의"로 함
- 안 제9조 제3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함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단체장의 의견 (기획관리실장 김동기)

-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 7월경 중앙부처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고
- 여성정책 5개년계획 등에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서식
-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본문
- 원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-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